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9.

발 의 자 : 강득구·김민기·홍성국
이원욱·김민석·이상현
이용빈·민병덕·이장섭
김진애·김영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교육공무원은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,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고충심사의 결과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의 갑질사항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조치에 그치고 있고, 각 직렬별, 직종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조사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(안 제49조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고충심사위원회”를 “고충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⑧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고루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⑨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고충처리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9조(고충처리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고루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⑨ 제8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</u>

⑧ <u>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</u>의 구성·권한·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⑩ -----<u>고충심사위원회</u> 및 <u>분과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
---	--